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07월 30일, 홍기원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08월 0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2.04.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2.11.0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3.02.0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3.02.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홍기원)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지민)

가.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안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 2.</u> (생략) ⑤ · ⑥ (생략)	<u>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u> 철도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u> <u>2.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 의견

대규모 운송수단인 열차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함. 운전실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항공안전법 등 타법 사례를 고려할 때 철도 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흡연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여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를 통한 흡연 규제의 이행력 확보는 적절함.

3) 검토의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¹⁾ 및 제34조제3항²⁾에 따르면,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열차³⁾는 동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서 누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 13. (생략)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 26. (생략)

⑤ ~ ⑦ (생략)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⑤ (생략)

3)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

구든지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제47조4), 제82조제4항5) 및 제50조제4호6)에서는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흡연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지 및 퇴거 조치

한다.

4)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⑤·⑥ (생략)

6)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흡연 금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철도종사자가 열차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임. 이에 개정안은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여객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여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40조의3은 열차 내 흡연 금지의무 적용 대상을 철도종사자⁷⁾로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종사자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과 같이 주로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자 외에 관제업무 종

7)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사자, 작업책임자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열차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누구든지 열차 내 흡연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흡연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이를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의 범위에 현행 제21조⁸⁾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항공안전법」 제57조의2⁹⁾에서도 항공기 내 흡연이 금지되는 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¹⁰⁾ 외에 동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항공종사자¹¹⁾ 및 객실승무원이고, 항공기 내

8)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9) 「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11) 「항공안전법」

흡연이 금지되는 항공종사자의 범위에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금지 요건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안전법」 제57조의2의 규정과 같이¹²⁾ 철도업무와 관계없이 여객으로 열차에 탑승하여 흡연을 하는 경우 적용 법 규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47조제1항제4호¹³⁾에 따른 여객의 흡연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둘째,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여객과 동일한 수준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는 여객의 흡연 등 금지행위에 대해 여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여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며, 운송 관련 유사 입법례를 보면, 항공종사자·버스 운수종사자가 흡연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외에 자격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¹⁴⁾ 등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8, p.5

13)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14)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에서는 흡연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효력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의 흡연행위에 대해 여객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만약 철도종사자의 책무를 고려하여 여객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려는 경우 철도종사자 중 자격을 요하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사유¹⁵⁾에 흡연 금지 의무위반을 포함하거나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과태료 금액(100만원 이하)은 항공을 제외하면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흡연행위에 대해 철도종사자를 여객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운송 분야 흡연 관련 규정 현황을 보면, 「항공안전법」¹⁶⁾ 및

15) 「철도안전법」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 ⑥ (생략)

「항공보안법」¹⁷⁾에서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기 승객에 대해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 1천만원 이하(주기 중 또는 계류 중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⁸⁾

16) 「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17)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7. (생략)

②~⑨ (생략)

제50조(벌칙) ①~⑥ (생략)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⑨ (생략)

18)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6. 9., 2020. 12. 8., 2021. 5. 18.>

1~15.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¹⁹⁾ 및 여객²⁰⁾의 준수 사항으로 흡연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²¹⁾ 여객의 금연의무 위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31. (생략)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 1. 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①·② (생략)

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흡연 등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의 위반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그 밖에 여객선 등 해상운송사업의 경우 근거법령에 흡연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운송수단별 흡연 관련 제재규정 】

분야	여객	종사자
항공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0~180일 자격정지*
철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생략)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략)

분야	여객	종사자
버스·택시 등	금지규정은 있으나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버스운수종사자 :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 취소**
해운	흡연 관련 규정 없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운항 중인 경우) 1차위반: 60일, 2차위반: 120일, 3차위반: 18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 (버스운전자격)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택시운전자격) 흡연금지위반 관련 별도의 제재규정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